

2025 부산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 인력 지원사업 공고(추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의 제작지원 활성화를 위한 「부산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가. 지역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

나. 콘텐츠 제작 환경 안정화를 통한 프로젝트 제작 부담 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가. 모집기간 : 2025. 4. 30.(수) ~ 5. 14.(수) 14:00까지

나.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1. 30.(일) (최대 6개월)

다. 지원규모

1) 콘텐츠 스타트업 5년 이내 **4개사 내외** 규모 지원

2) 기업당 최대 2명, 월 180만원, 인건비 6개월 한도 지원

라. 지원대상 : 콘텐츠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기업

1) 사업장 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 개업 5년 이하 콘텐츠 기업 (본사 또는 지사)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 게임, 출판, 영화, 문화예술공연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제외

2) 근로자 요건

- 선정된 사업장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분야 인력

마.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인력 월 인건비 180만원

1) 근로자의 인건비는 **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필수**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준수

2) 인건비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이 포함됨

- 단, 4대 보험의 기업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3) 인건비 중 지원금 1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기업부담
- 4) 최초 지원금 청구는 근로유지 최소 3개월 이후 가능하며, 4개월 차부터는 월별 청구 가능

※유의사항

근로유지는 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나, 지원금 지급은 협약체결일부터 책정

[예시]

■ 25.1.1. 신규채용 및 25.4.1 협약체결

- 1월~3월 근로유지 3개월 인정되며, 인건비는 4월부터 월별 지원금 청구 가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근로유지 3개월 인정			협약체결							
지원금 월별청구 가능										

■ 25.3.1. 신규채용 및 25.4.1 협약체결

- 3월 근로유지 1개월 인정되며, 3월~5월 3개월 근로유지 이후
4월~5월 2개월분 지원금 청구 가능, 6월부터 월별 청구 가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근로유지 3개월 인정								
			협약체결							
			2개월분 청구		지원금 월별청구 가능					

5) 지원불가 대상

-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근로자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 참여 배제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공급)업을 겸하고 있는 기업
- 사행성 도박성 및 성인물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하는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기업, 기타 정부 사업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및 기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부산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인력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26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3 사업 신청 및 선정

가. 신청기한 : 2025. 4. 30.(수) ~ 5. 14.(수) 14:00까지

나. 신청방법 : 담당자 메일 제출

(담당자)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맑음 대리
(연락처) 051-749-9178 / (e메일) sme0719@busanit.or.kr

다. 제출서류 : 전체 제출서류 취합하여 PDF 파일 1개로 제출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1
2	사업운영 계획서	서식2
3	이행확약서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서식4
5	콘텐츠업 주력 업종 확인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8	4대보험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해당시
-	그 외 증빙자료	특허, 인증 등

라. 선정방법 :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현장방문 및 서면심사

- 1) 사업자 소재지 및 사업장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필요시)
- 2) 5인 이상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평가
- 3)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대상 지원 및 협약 체결

마.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업역량 (20점)	기업의 규모 및 포트폴리오, 성장 가능성	10점
	주력 제품(서비스)의 매출 안정성, 기술력	10점
프로젝트 (30점)	프로젝트 개발 추진 상황이 안정적인가	15점
	고용사유 및 담당업무의 적정성	15점
근무환경 (20점)	근로자의 고용 조건 및 고용 형태 계획	10점
	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 후생 등 지원 항목	10점
고용유지 (30점)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관리운영 계획	30점
합 계		100점
가산점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입주기업	2점

4 사업 운영 및 향후 일정

가. 추진절차



나. 기업에서 자부담으로 월별 인건비를 지급한 후,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면 해당 월의 인건비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최초 지원금 청구는 근로유지 3개월 이후 가능하며, 4개월 차부터는 월별 청구 가능

라. 협약이 종료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미청구한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 (공통) 고용유지 3개월 미만 시에는 지원금을 일체 지원하지 않음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것
- (근로자 자진퇴사) 지원기간 동안에 대한 지원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해당 기업은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 대체채용 기회가 주어지며, 1개월을 초과시 배정포기 간주
- (기업의 인위적 감원) 감원날짜 기준으로 지원종료(고용보험 상실날짜 기준)
 -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5 사업 제한 등 유의 사항

가.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교육 대상의 중도 퇴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 배제될 수 있음

나.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 원이나 여타 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에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본 사업의 신청 및 수행에 있어 우리 원의 공고 및 사업 안내서, 협약서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및 수행기관의 책임임

마. 수행기관에 제재 사유가 발생(지원금 부당사용, 기타 해약 사유)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기관명, 사유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바.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각종 증명서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사.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

(담당자)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맑음 대리

(연락처) 051-749-9178 / (e메일) sme0719@busanit.or.kr